

July 12, 2024

## 산업안전 사건 동향: 내사종결 - 크레인 설치 작업 중 사고

올해 노동청은 A사의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업체 작업자가 크레인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A사에 크레인을 임대한 크레인 업체 측이 A사의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설치·조립하는 작업(이하 "사고원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이 노동청 및 검찰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위 내사종결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 I. A사와 크레인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 변론

BKL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A사가 크레인 업체와 크레인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에 착안하여, A사와 크레인 업체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에 있지 않고 임대차관계에 있으며, 사고원인 작업은 건설기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에 해당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II. A사는 사고원인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변론

BKL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건설공사의 전단계에서 크레인의 임대인이 크레인을 설치·조립하는 과정은 크레인 업체의 전문 영역임을 다각도로 설득하였습니다. BKL은 사고원인 작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크레인을 임차한 A사로서는 사고원인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III.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변론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의 책임 외에, 동법 제76조의 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BKL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상세히 밝혀 사고원인 작업은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IV. 시사점: 작업의 세부 내용과 법령, 판례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BKL은 이 사건 사고원인 작업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제반 규정 및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노동청도 BKL의 변론 취지를 깊이 숙고한 끝에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계 최초로 산업안전 TFT 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산업안전사고 대응 및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 를 중대재해예방·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구성원

**김신**

변호사

T 02.3404.0389

E [sin.kim@bkl.co.kr](mailto:sin.kim@bkl.co.kr)

**송진욱**

변호사

T 02.3404.0462

E [jinwook.song@bkl.co.kr](mailto:jinwook.song@bkl.co.kr)

**김경한**

변호사

T 02.3404.6960

E [kyunghan.kim@bkl.co.kr](mailto:kyunghan.kim@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